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| 3 |
| 신청대상 | 3 |
| 신고장소 | 3 |
| 신고방법 | 3 |

신청대상

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「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」를 운영하오니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
-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
- 개설등록증, 공인중개사 자격증, 수수료 요율표,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제시한 경우
- 중개업자가 아닌자(중개보조원 등)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, 교환,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선하는 경우

신고장소

-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또는 강진군청 민원실
- 전라남도청 : 061-286-7624
- 강진군청 : 061-430-3454
- 전라남도 홈페이지 <http://www.jeonnam.go.kr> "부동산 불법신고센터"를 활용

신고방법

- 인터넷 신고
- 민원 서류
- 방문 신고(단, 익명신고는 불문처리)

GANGJIN

Web Contents

